

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퇴직연금가치4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	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일괄신고서	-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집합투자규약

항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<생략>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2015년 1월 1일 이후)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	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4. <좌동>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2015년 1월 1일 이후). 다만,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

		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 ~ 2. <생략> 3. <신설>	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 1. ~ 2. <좌동> 3. <u>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</u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생략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~ 5. <생략>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<좌동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3. ~ 5. <좌동>

◆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
항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	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	<u><삭제></u>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</u>
간이투자설명서 [요약정보]- 투자비용/투자실적추이/운용전문인력		<u><생략></u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나. 투자운용인력 최근 변경 내역		<u><생략></u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u><신설></u>	<u>증권대차 거래의 목적 기재</u>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	<u><신설></u>	<u>증권대차 거래의 위험 기재</u>

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	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(연환산 표준편차 : <u>7.73%</u>) <후략>	신영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, 6등급 중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(연환산 표준편차 : <u>6.51%</u>) <좌동>
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3부 1. 재무정보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		가. 요약재무정보 <u><신설></u>	가. 요약재무정보 <u>- 증권의 대여/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</u> <u>-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</u> <u>- 주식의 매매회전을</u>
제3부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	<신설>	<u>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현황 기재</u>
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	<생략>	<u>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u>
제4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 업무 (1) 주요 업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생략> <u><신설></u>	<좌동> <u>-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</u> <u>·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
제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제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(www.syfund.co.kr)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,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1. <생략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(www.syfund.co.kr)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,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 1. <좌동>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

<p>제5부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</p>	<p>내부지침 변경사항 반영</p>	<p><지분증권거래> 2) 선정방법 -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 분기 평가 가능한 <후략></p>	<p><지분증권거래> 2) 선정방법 -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월 평가 가능한 <좌동></p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